

의안번호	2220721
의 퇴 인	김영진 의원
회 답 일	2026. 9. 22.
추 계 번호	26F4192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업무용승용차 비용 손금산입 한도 조정 등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등 손금산입 한도를 전기자동차 등은 현행 800만원에서 1,000만원으로, 그 외 차량은 700만원으로 조정하는 경우, 법인세는 2027년 22억원, 2036년 53억원 등 2027년에서 2036년까지 10년간 총 1,885억원(연평균 18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개정안은 현행 업무용자동차 비용 손금산입 한도를 축소하여 적용받는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한도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, 해당 비용을 추계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하여 본 추계에서 제외함
 - 업무용자동차 비용 손금산입 한도(부동산임대업): (현행) 400만원 → (개정안) 전기자동차 등 500만원, 그 외 차량 350만원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: 법인세, 2027~2036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2032
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산입 한도 조정 (안 제27조의2)	-22	-97	-173	-248	-324	-355
	2033	2034	2035	2036	누적	연평균
	-280	-204	-129	-53	-1,885	-189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7조의2 (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)	○ 업무용승용차의 친환경차 여부에 따라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 관련 손금산입 한도를 차등하여 조정 - 일반법인: (현행) 800만원 → (개정안) 전기자동차 등 1,000만원, 그 외 700만원 ※ 단, 부동산임대업의 경우: (현행) 400만원 → (개정안) 전기자동차 등 500만원, 그 외 350만원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27조의2 (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)	○	○ 부동산임대업 법인에 대한 업무용승용차 비용 손금산입 한도 조정 관련 세수효과는 기초자료의 부재로 합리적 으로 추계할 수 없어 본 추계 에서 제외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7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

- 법인세 확정신고 등을 고려할 경우 2027년 귀속분에 대한 효과는 2028년부터 발생하지만, 중간예납을 통해 세수효과의 일부가 2027년에 발생할 것으로 가정

□ 개정안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등 한도 조정으로 인한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

- 향후 감가상각비 등 법인의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등 손금산입 신청금액 대별 분포는 2024년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
- 향후 기업의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신청 및 감가상각비 한도초과금액은 2025년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－ 2024년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등 금액대별 분포를 바탕으로 세수효과를 추정한 후, 2025년의 손금산입 신청금액 및 한도초과금액의 증가율을 바탕으로 세수효과 추정치를 조정
- 향후 업무용승용차 중 한도가 상향조정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비중은 2026년 7월 기준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에서 전기자동차 등이 차지하는 비중(61.7%)과 동일하다고 가정
- 세수효과 중 중간예납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비중은 2025년 총 부담세액에서 중간예납이 차지하는 비중(29.3%)과 동일하다고 가정

- 이외에도 개정안은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업무용자동차 감가상각비 등 손금산입 한도를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나, 해당 법인을 구분한 자료의 부재로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어 본 추계에서 제외

3. 상세 추계내역

- (2024년 신고 현황) 국세청이 제출한 2024년 기준 법인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등 비용의 손금산입 신청금액대별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음
 - 개정안에 따라 손금산입 한도 조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은 2024년 기준 700만원 초과 금액구간에 분포하는 37.8만대 수준

[표 2] 법인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신청금액대별 신고 현황: 2024년 신고 기준

금액대별 구간	차량 (A,만대)	감가상각비 (B,억원)	대당 감가상각비 (B/A,만원)
700만원 이하	80.2	20,759	—
700~800만원	5.3	3,959	750
800~900만원	4.3	3,673	849
900~1,000만원	3.8	3,594	949
1,000~1,100만원	3.3	3,421	1,048
1,100~1,200만원	2.8	3,164	1,150
1,200~1,300만원	2.5	3,140	1,249
1,300~1,400만원	2.2	2,933	1,349
1,400~1,500만원	1.8	2,555	1,449
1,500~2,000만원	5.3	9,108	1,720
2,000만원 초과	6.7	20,726	3,081
전 체	118.0	77,031	—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개정안에 따른 조정대상 차량대수 및 소득변화 추정) 2024년 신고현황을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라 손금산입 한도가 조정되는 차량대수와 해당 한도 조정 효과를 추정

- 금액대별 구간의 차량대수에 2026년 7월 기준 연료별 신규 자동차 등록현황의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비중(61.7%) 및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내용연수(5년)에 따른 신규차량 비중을 반영하여 조정대상 차량대수를 추정
 - 2025년말 대비 2026.7월간 연료별 사업용승용차 등록현황 증감을 살펴보면, 전체 증가대수 6.2만대 중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는 3.8만대로 61.7% 수준
 -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내용연수(5년)를 반영시 신규 자동차의 비중은 전체의 20% 수준으로 가정하여 추정
 - 해당 비중을 바탕으로 700~800만원대 구간 차량 중 손금산입 한도가 하향 조정되는 일반 차량대수와 800만원 이상 구간 차량 중 손금산입 한도가 상향 조정되는 전기자동차 등의 차량대수를 추정
- 금액대별 구간의 해당 평균 감가상각비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한도변화를 반영하여 법인의 소득변화를 추정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한도조정 대상 및 소득변화 추정: 2024년 신고 기준

금액대별 구간	차량(만대)				대당 한도변화(만원)		개정안에 따른 소득변화(A×B, 억원)
	전체	손금산입 조정비중(%)	신규차 비중(%)	조정대상(A)	대당 감가상각비	개정안에 따른 한도변화(B)	
700~800만원	5.3	38.3	20.0	0.4	750	50	20
800~900만원	4.3	61.7		0.5	849	△49	△26
900~1,000만원	3.8	61.7		0.5	949	△149	△70
1,000~1,100만원	3.3	61.7		0.4	1,048	△200	△605
1,100~1,200만원	2.8	61.7		0.3	1,150		
1,200~1,300만원	2.5	61.7		0.3	1,249		
1,300~1,400만원	2.2	61.7		0.3	1,349		
1,400~1,500만원	1.8	61.7		0.2	1,449		
1,500~2,000만원	5.3	61.7		0.7	1,720		
2,000만원 초과	6.7	61.7		0.8	3,081		
전 체	118.0	—	—	—	—	—	△680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향후 세수효과 추정) 2025년 기준 업무용자동차 손금산입 한도 신청 금액 및 한도초과금액의 증가율과 법인세 실효세율 등을 반영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정

-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한도의 신청금액 중 한도내 금액과 한도초과금액은 2025년 기준 각각 2.7%, 10.9% 증가

[표 4]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신청금액 현황: 2024~2025년

(단위: 억원, %)

	총신청금액(A)	한도초과금액(B)	한도내금액(A-B)
2024년	129,968	28,840	101,128
2025년	135,814	31,992 (10.9)	103,822 (2.7)

주: ()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을 의미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해당 비중을 손금산입 금액대별 소득변화에 적용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반영하면, 2025년 귀속기준 연도별 세수 감소효과는 75억원 수준으로 추정
 - 2025년 기준 법인세 이익법인의 비율은 전체 신고법인의 59.0% 수준
 - ※ 2025년 법인세 신고분 이익법인수(64.1만개) / 총신고법인(108.7만개) = 59.0%
 - 한편, 법인세 실효세율(과세표준 대비 총부담세액 비율)은 16.9% 수준
 - ※ 2025년 법인세 신고분 총부담세액(72.2조원) / 과세표준(427.0조원) = 16.9%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한도조정 대상 및 소득변화 추정: 2024년 신고 기준

(단위: 억원, %)

금액대별 구간	개정안에 따른 소득변화 ('24년 기준, A)	'25년 손금산입 신청금액 증가율 (B)	흑자법인 비율 (C)	법인세 실효세율 (D)	세수효과 (A×B×C)
700~800만원	20	2.7	59.0	16.9	2
800만원 초과	△701	10.9			△77
전 체	-	-	-	-	△75

자료: 국세청 국세통계시스템(TASIS)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향후 세수효과는 중간예납 등을 반영하여 귀속 당해연도 발생분과 다음연도 발생분을 구분하여 추정
 - 2025년 기준 총부담세액 대비 중간예납 비중은 29.3%로, 해당 비중을 적용하면 귀속 연도 기준 당해연도 세수효과 발생분은 △22억원, 다음연도 발생분은 △53억원으로 추정
 - ※ 2025년 법인세 신고분 중간예납액(21.1조원) / 총부담세액(72.2조원) = 29.3%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연도별 세수효과 발생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2032	2033	2034	2035	2036
2027년 신고분	-22	-75	-75	-75	-75	-53				
2028년 신고분		-22	-75	-75	-75	-75	-53			
2029년 신고분			-22	-75	-75	-75	-75	-53		
2030년 신고분				-22	-75	-75	-75	-75	-53	
2031년 신고분					-22	-75	-75	-75	-75	-53
계	-22	-97	-173	-248	-324	-355	-280	-204	-129	-53

- 개정안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등 손금산입 한도를 전기자동차 등은 현행 800만원에서 1,000만원으로, 그 외 차량은 700만원으로 조정하는 경우, 법인세는 2027년 22억원, 2036년 53억원 등 2027년에서 2036년까지 10년간 총 1,885억원(연평균 18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개정안은 현행 업무용자동차 비용 손금산입 한도를 축소하여 적용받는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한도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, 해당 비용을 추계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하여 본 추계에서 제외함
 - 업무용자동차 비용 손금산입 한도(부동산임대업): (현행) 400만원 → (개정안) 전기자동차 등 500만원, 그 외 차량 350만원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: 법인세, 2027~2036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2032
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산입 한도 조정 (안 제27조의2)	-22	-97	-173	-248	-324	-355
	2033	2034	2035	2036	누적	연평균
	-280	-204	-129	-53	-1,885	-189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